

#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에 따른 향후 세대별 노후소득 수준 비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이 다 미\* · 정 창 룰\*\*

##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퇴직연금이 향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유의미한 제도로 기능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사용하여 세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만 받게 될 때, 거둬진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해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되어 노후소득 보장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상쇄되어 미래세대의 노후소득 수준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그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되더라도 거의 모든 계층에서 급여인상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노후소득에서 퇴직연금의 비중이 커질수록, 후세대로 갈수록, 계층별 연금 격차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의 의무화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수적이며, 여성, 저임금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연금 차원의 개선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노후소득보장,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적정성, 국민연금, 퇴직연금 의무화

\* 주저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ekal84@yonsei.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mymetapho@hotmail.com)

## 1. 문제제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제도는 국민연금이지만, 현재 노인세대와 후세대 모두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소득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40년 가입 시 7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이후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과 2007년 연이어 국민연금을 삭감하면서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향후 노후소득의 부족으로 연결될 개연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에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하여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둬들인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축소, 2005년 퇴직연금 도입,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으로 외형상으로는 다층체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정창률, 2010). 그러나 각 제도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개인들은 자신들의 노후소득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sup>1)</sup> 퇴직연금 역시 이를 유의미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에서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도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의견 차이는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보험료 추가 인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내실화, 즉 실효성 강화를 통해서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실제 보험료 납입 측면에서 보면 이미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준하는 보험료 - 8.33% 이상 - 를 부담하고 있는데, 급여 측면에서 이를 노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퇴직연금은 더 이상 변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상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퇴직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예를 들어, 중간정산이나 일시금 수령 등 - 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을 위한 의무적 제도로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강력한 2층 노후보장제도로 기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제도적 기

1) 기초연금은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구성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이나, 장기적으로 어떤 제도로 귀결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능을 국민연금의 영역으로 일부 전환하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관계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고(Rein & Wadensjö, 2006), 실제로 서구 복지국가들은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 연금의 급여 축소를 기업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의 규제(regulation) 강화를 통해 보완해 왔다(Whiteside, 2006). 다시 말해, 어떤 식으로 기업연금에 '공적 목적(public ends)'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해 온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이 온전히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sup>2)</sup> 세대별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이 미치는 영향과 퇴직연금의 가입기간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을 세대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Meyer et al.(2007)과 Bridgen & Meyer(2009)가 제시하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hypothesis risk biography)' 방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본 방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체계가 서구 국가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비교할 때 노후소득보장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간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다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접근은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연금 적정성 논의에 있어서 제도적 측면과 노동시장 측면이 혼재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애 근로기간이 짧은 것에서 발생하는 노후소득의 부족을 연금제도의 문제로 환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노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겠으나, 어느 정도의 노후소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측면은 순수하게 연금제도 측면에서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이론적 논의로 연금 적정성의 이론적 개념과 연금소득의 다양한 추정방식, 그리고 한국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적정성 논의를 살펴본다. 3장은 분석방법과 주요 가정들을 다루게 되며, 이어 4장에서는 세대별 연금소득을 추정한 결과들을 제시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5장에서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2) 분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 주된 이유는 3장의 3절(기초 가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 1) 연금 적정성(adequacy)의 이론적 개념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는 없다. 실제로 공적연금에 있어서 '적정성(adequacy)'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이때 국제기구별로 제시하고 있는 적절한 수준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일찍이 EC는 적정성을 노인빈곤의 예방, 은퇴 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세대 내·세대간 연대성의 촉진이라는 3가지 요소가 내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로 소득대체율을 통해 측정된다. World Bank는 적정 소득대체율의 수준을 40%로 제시하였으며, 60%를 초과하면 기여 부담이 그만큼 커져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Holzmann & Hinz, 2005). ILO는 조약 제238조에서 45%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적절한 연금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주목할 만한 보고서는 2012년 EU 차원에서 발간한 연금개혁 백서로, 연금개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준거 틀인 연금 OMC(Open Method of Coordination)<sup>3)</sup>의 세 가지 기본원칙 가운데 적정성 원칙 - 사회적 배제의 완화,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연대성의 증진 - 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수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나, 노후소득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지표(primary indicators)를 제시하였다(EC, 2012; 2005).<sup>4)</sup> 대부분의 지표들이 현재 시점에서의 적정성만을 반영하는 것에 반해, 미래의 연금소득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는 이론적 소득대체율이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총소득대체율과 예상 소득대체율의 경우, 어떠한 연금소득을 고려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는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측정되지만 (기업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이 의무적 혹은 준의무적(quasi-mandatory) 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다루기도 한다.<sup>5)</sup> 아래 [그림 1]과 같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가들에서 사적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적연금의 일방적인 배제는 국가 간 노후소득 수준의 비

3) OMC는 개방형 조정방식(Open Method of Cooperation)의 약자로 사회정책을 위한 비규제적 정책도구로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EU국가 간 상호합의된 목표를 설정하여 서로 배우고 감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성공적인 정책의 벤치마킹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럽연합은 더 전략적인 연금개혁을 위하여 회원국들이 성공적인 연금개혁의 사례를 서로 배우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성법의 일종인 OMC를 강조하고 있다(유호선,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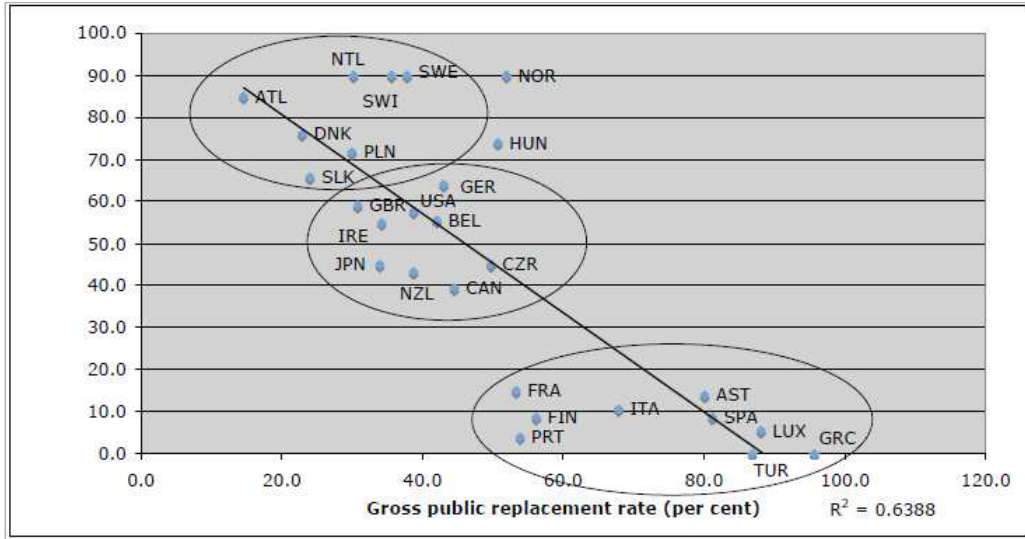
4) 65세 이상 노인집단의 빈곤위험률(공적이전소득 포함, 중위소득의 60% 미만), 상대적 중위소득(65세 미만 인구의 가처분 중위소득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가처분소득 비율), 총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 예상 소득대체율과 공적연금 지출액의 변화(40년 가입 후 65세에 퇴직하여 받게 되는 예상 소득대체율)로 구성되어 있다(EC, 2009).

5)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연금이 준의무적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로는 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교를 왜곡할 개연성이 높다. 물론 사적연금 가입률이 낮은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1] 사적연금(기업연금) 가입률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관계

(단위: %)



자료: OECD(2009)

## 2) 연금소득의 다양한 추정방식

먼저, 이론적 소득대체율(prospective theoretical replacement rates)을 산정하는 것은 국가 간 비교연구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평균소득을 가진 임의의 가입자를 설정하고, 이들이 은퇴 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를 노후소득으로 획득하게 되는지를 산정하는 것이다.<sup>6)</sup> 실제로 OECD 연금모형의 경우에도 이론적 소득대체율 산정방식을 통해 각국 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이는 현재 20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40년 이상) 표준 수급가능연령까지 근로하는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를 가정하여 연금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되는지를 추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사적연금 급여를 어떻게 고려할지가 중요한데, OECD는 적용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연금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와 같이 기업연금이 사실상 의무적인 경우에는 공적연금 합산 시 이를 포함한다. 다만 OECD의 방식은 4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전제하기 때문에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권혁창 외, 2018).

6) 총소득으로 할 것인지 순소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급여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OECD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자 외에도 평균임금의 50%, 150%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이론적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OECD, 2017).<sup>7)</sup> 연금제도가 완전소득비례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차이가 없겠지만 재분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대체율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전형적인 소득비례연금(완전소득비례)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대체율 차이가 없으나, 영국, 덴마크 기초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이 사실상 기초보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대체율은 높아진다(OECD, 2017).

이러한 방식들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임의로 가입자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것에 있다. 안정적으로 40년 이상 평균소득을 얻게 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경우의 수를 더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10대 후반부터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노동시장에 남아있다는 가정 자체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다만 비교대상이 국가별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 간 공적연금 가입기간의 차이로 인한 급여수준의 차이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서는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출산 이후 자발적으로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sup>8)</sup> 이로 인해 노후소득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소득대체율 산정방식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후빈곤에 관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론적 소득대체율 산정방식에서는 20세 초반부터 수급개시연령 직전까지 꾸준히 노동시장에 참여하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현실성을 일부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평균소득의 임의 가입자를 설정하되, 생애 노동이력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3년 실업, 3년 육아휴직, 10년 경력단절, 조기은퇴, 은퇴연기 등을 가정하여 소득대체율을 산정하는 것이다(EC, 2010).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각국의 연금제도가 실업이나 육아휴직 등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는 하나, 이 역시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7) EU의 경우, 단일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OECD 연금모형과 달리 총 4가지 가정들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하게 이론적 소득대체율을 추계하고 있다. EU의 Pension Adequacy Report(2015)에 따르면 2016년 당시 25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2056년까지 총 40년 근로한 경우, 2016년 당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총 40년 근로한 경우, 2056년 당시 25세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각국이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조정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 각국의 노동시장 진입과 은퇴의 특수성이 반영된 가정으로 구분하여 미래 연금액을 전망하고 있다.

8)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증가시켰고, 이는 여성고용률의 증가로 이어졌다(Visser & Hemerijck, 1997; Schils, 2009).

그 외에도 급여비율(benefit ratio)과 총소득대체율(aggregate replacement ratio)을 사용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급여비율은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임금 대비 공적연금의 평균급여를 측정하는 것이고, 총소득대체율은 50~59세 인구의 근로소득 대비 65~74세 인구의 연금소득 비율로 보다 현실적인 소득대체율이라 볼 수 있다.<sup>9)</sup>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이 그리스의 경우로, 이론적 소득대체율은 105%이나 총소득대체율은 49%에 불과하다. 이는 그리스의 평균 가입기간이 짧은 것에서 비롯된다. 급여비율과 총소득대체율은 실제로 EU의 ‘고령화 보고서(The Ageing Report)’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래 소득대체율이 추정이 아닌 현 시점에서의 노후소득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균값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빈곤 위험이 있는 계층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연금소득을 추정함에 있어서 OECD와 같이 비현실적인 특정 인구집단을 설정하거나, 대표가입자를 설정하여 여러 가정들을 기초로 패널자료 등을 통해 시뮬레이션하는 방식(강성호 외, 2008; 강성호, 2011; 우해봉·한정림, 2014; 2015 등)이 자주 활용되어왔다. 이 경우, 계량경제에 기초한 모형을 설정하여 근로기간, 생애소득 등을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후소득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추정모형에 근거한 방식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제도에 대한 개선인지,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시사점 제공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를 나타낸다.<sup>10)</sup>

### 3) 한국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적정성 논의

앞서 문제제기를 통해 외형적으로 한국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난 2007년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단일보장체계에서 다층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김진수·이윤진, 2013).<sup>11)</sup>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0층에는 기초연금이, 1층에는 국민연금이, 2층에는 퇴직연금이 존재하는데, 각 층(tier)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기능하고 있다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외형적으로 다층체계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연금의 성격이 불명확하고,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혼재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관한 기존 논의들 역시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다층체계의

9)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Zaidi et al.(2006)은 ‘50~59세 근로인구의 중위소득 대비 은퇴자의 공적연금 소득’을 통해 연금제도 관대성의 변화를 측정한 바 있다.

10) 또한 서베이자료를 활용하는 방식들도 활용되는데, 이 경우 보고된 소득과 실제 소득 간 상당한 괴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홍백의, 2013). 최근 국민연금 DB를 활용한 연구들이 이 같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11) 이용하(2011)의 경우에도 연금개혁을 통해 외형상 다층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나, 내실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시각보다는 국민연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나타낸다(강성호 외, 2008; 우해봉·한정림, 2014; 권혁진·류재린, 2018 등). 퇴직연금까지 더하여 분석한 연구들은 수급률에 초점을 두거나(김수완·김순옥, 2007), 급여수준까지 다루더라도 대표가입자 방식이 갖는 한계를 나타낸다(우해봉·한정림, 2015). 이에 본 절에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적정성'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는 40년 가입 시 평균 7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는 40년 가입 시 평균 40%로 하락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재분배 요소(A값)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른 대체율의 차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대체율 차이를 비교하면, 2028년 이후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소득자는 30%, 1/2 평균소득자는 45%, 평균소득의 2배를 버는 경우 22.5%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OECD(2017)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총소득대체율에 따르면, 평균소득자 기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9.3%로 나타났다.<sup>12)</sup>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모형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우해봉·한정림(2015)은 1960년생은 28.98%, 1970년생은 30.79%, 1980년생은 30.14%의 대체율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소득대체율의 점진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대체율 감소 추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1960년생의 경우 상당수가 20~30대 당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sup>13)</sup>

한편 한국의 퇴직연금 급여는 여전히 중간정산이 - 일부 제한규정이 있긴 하나 - 가능하고, 절대다수(약 98% 이상)가 일시금 형태로 받으면서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의 역할에 한계를 나타낸다. 정부는 2014년 8월,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퇴직연금의 의무가입을 2022년까지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공적 성격 - 공공성 - 강화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은 의무적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연금(annuity) 방식으로 급여방식이 일원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창률, 2018).

만약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없이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가지게 될지에 관한 다양한 추정방식들이 존재한다.<sup>14)</sup>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의 객관성을 담보하

12) 0.5 평균소득자는 58.5%, 1.5배의 평균소득을 버는 경우에는 28.7%로 나타났다.

13) 그러나 우해봉·한정림(2015)의 연구는 대표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반영하지 못한다.

14) 일부 민간 연구기관들의 경우 가입기간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하고 이른 나이에 수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의도적으로 낮게 소득대체율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지급개시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지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되게 하였다. 이 경우, 30년 가입 시 약 18~20%의 소득대체율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추정모형을 사용한 우해봉·한정림(2015)의 경우, 중간정산 없이 오직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소득 대체율을 산정한 바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외형상 다층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각 제도가 다층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려가 배제된 채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퇴직연금이 다층체계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하고, 한국의 다층체계가 어떤 제도들을 포함하여 노후소득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합의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 3. 분석방법 및 주요 가정

#### 1) 분석방법

본 연구는 Meyer et al.(2007), Bridgen & Meyer(2009)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hypothetical risk biographies)의 가정에 따라 연금소득을 추정한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을 고려하여 특정 인구집단을 설정하고, 이들의 생애임금을 바탕으로 공·사적연금에서의 급여수준을 파악하는 방식이다(김진수 외, 2015). 이를 통해 각국 연금제도의 특성에 따라 어떤 집단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취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인구집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전체 연금수급자나 연금재정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까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개인의 노동시장 특성 - 업종, 사업장 규모, 전체 근로기간, 전일제 여부 등 - 에 따라 노후소득보장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고, Bridgen & Meyer(2009)의 유럽 5개국과도 비교가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창률(2012)의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의무화 시점에 따라, 김진수 외(2015)는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정창률(2012)의 연구는 퇴직연금 의무화시점이 앞당겨질수록 노후소득이 높아질 것을 예측하였으나, 세대별로 그 수준의 차이까지 다루지는 못하였다.

이 방식의 장점은 12명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대부분이 빈곤위험이 높은 계층으로, 이들이 어떻게 노후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지금까지 명

목소득대체율 방식이 주로 전일제 남성근로자에 기초해 온 것과 비교할 때, 여성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고,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고려한 것 역시 일정 부분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비교연구 시, 12개 인구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생애 노동 및 임금이력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각국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기간이나 임금수준과 같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국가 간 노후소득의 차이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5)</sup>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소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현 시점에서의 제도 상황 - 중간정산과 일시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 - 에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과 일시금 수령이 없다는 가정 아래, 퇴직연금이 2020년에 의무화되어 자영자, 시간제 근로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용되는 상황에서 향후 세대별 노후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 2)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설정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은 Meyer et al.(2007)이 제시한 이후<sup>16)</sup> EU 차원에서 국제비교 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위험들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생애 근로이력과 소득수준을 설정하고 있다(정창률, 2012). 남녀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구집단들의 연령에 따른 임금이력이 제시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 이력까지 포함하게 된다.

12가지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주요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남녀 각각 6명으로 구성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통해 결혼, 출산, 이직, 실업과 같은 개인의 생애 이력에서의 차이가 노후소득에서 어떠한 격차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 예로 인구집단 3과 4는 전체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이 동일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다름에 따라 노후소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17)</sup> 인구집단 9와 12는 근로기간이 같음에도 사업장 규모, 평균임금에서의 차

15)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실제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임금 이력의 경우 서구 국가들이 한국보다 연공서열의 정도가 대단히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아직까지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시 일부 왜곡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초점은 현재 연금제도 산식에 따른 급여수준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지, 노동시장 차이(근로연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실제 노후소득의 차이를 실증하는 것이 아니다. 거시경제변수의 경우에도 유럽 국가들의 기준에 따르다보니 한국의 현실과 차이가 발생하지만,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할 경우 오히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갖게 된다.

16) Meyer et al.(2007)은 9가지 이론적 인구집단과 그 안에서 사회적 위험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통해 19개의 가상적 위험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방식에 기초하여 이후 Bridgen & Meyer(2009)는 19개 인구집단을 12개로 보다 단순화하였다.

17) 인구집단 3은 부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만 4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가 크다. 인구집단 7과 10의 경우, 근로기간이 동일하고 평균소득의 차이가 작지만 근로형태(자영자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적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sup>18)</sup>

**[표 1]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12가지)의 설정**

집단	성별	특성	근로기간	전일제기간	평균소득	사업장 형태 및 규모	기타
1	여성	소매업, 조기퇴직	39년	6년	39%	대기업	자녀 2명
2		소매업, 전일제근로	42년	31년	47%	대기업	자녀 2명
3		복지부문, 조기퇴직	38년	6년	42%	대기업	자녀 2명
4		복지부문, 적용사업장 규모 변화, 조기퇴직	38년	6년	42%	대기업, 중소기업	자녀 2명
5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38년	27년	37%	소기업, 가정내 사업, 대기업	자녀 2명
6		비공식부문, 돌봄노동	40년	40년	22%	소기업, 가정내사업	자녀 3명
7	남성	자동차 생산 부문	46년	46년	79%	대기업	
8		자동차생산 부문, 적용사업장 규모 변화, 조기퇴직	38년	38년	65%	대기업, 중소기업	장기 실업
9		건설 부문	41년	41년	89%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	
10		자영업	46년	46년	84%	자영업	
11		화학부문 설비업	45년	45년	113%	대기업	
12		금융부문 중간관리	41년	41년	131%	대기업	

주)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출산크레딧을 적용함.

자료: Bridgen & Meyer(2007) 재구성.

### 3) 기초 가정

분석대상은 출생년도(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하였으며([표 2] 참조)<sup>19)</sup>, 노후소득은 국민연금만 수급하는 경우와, 여기에 퇴직연금까지 합산한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때 기초연금은 분석 시 포함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을 전액 - 국민연금 A값의 약 15% - 수급할 경우, 노후소득수준이 국민연금만 수급할 때보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급여연동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수준에 따

18) 각 인구집단의 임금이력, 혼인력 등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Meyer et al.(2007)을 참조하십시오.

19) 1970년생 이전에 출생한 세대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의 경우, 현재 중간정산이나 일시금 지급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고려해야 하고, 2020년에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연금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라 감액되는 등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한다. 특히 연금 외 소득과 재산, 부채까지 모두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국민연금에 연동하여 감액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노동 이력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sup>20)</sup>

**[표 2] 출생년도에 따른 인구집단의 설정**

구분	1970년생	1980년생	1990년생
노동시장 최초 진입시기(만 18세)	1988년	1998년	2008년
퇴직연금 의무화시점 (2020년)	만 50세	만 40세	만 30세
연금 수급개시년도 (만 65세)	2035년	2045년	2055년

주) 노동시장 최초 진입시기는 Meyer et al.(2007)의 가정에 따른다.

세대별 수급시점(만 65세)에서의 급여수준은 수급시점 당시의 평균임금 대비 비율(%)을 통해 비교하였다. 생애임금의 경우, 1993~2017년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평균임금<sup>21)</sup>을 적용하였고, 1988~1992년의 평균임금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없어 1993~2017년의 실제 임금상승률 평균치(6%)를 적용하였다. 2018년 이후의 임금수준은 Meyer et al.(2007), Bridgen & Meyer(2009)의 가정과 동일하게 명목임금상승률(3.9%)을 적용하였고, A값과 상·하한선 역시 명목임금상승률을 그대로 따랐다.<sup>22)</sup> 여성의 경우, 출산 이력을 바탕으로 출산크레딧을 급여산식에 적용하였다. 현재 한국의 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 합산하게 되고, 총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sup>23)</sup> 남성의 경우에는 6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였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Meyer et al.(2007)에서의 가정에 따라 수익률 연 6%, 연금비율(annuity ratio) 5%를 가정하여 DC형의 급여액을 산출하였다.<sup>24)</sup> 이직이나 실업, 조기은퇴로 인해 노동이력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중단시점부터 수급시점까지 매년 물가상승률 1.9%를 가상 수익률로 반영하였다.<sup>25)</sup>

20) 본 연구와 동일한 분석방법으로 연금급여를 추정할 정창률(2012), 김진수 외(2015)에서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수준만을 분석하였다.

21) 전 직종 평균 월 급여총액

22) Meyer et al.(2007)과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2018년을 전후로 평균임금에 상이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의 경우 미래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발생한 과거에 대해서는 실측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 출산크레딧에서 추가 가입기간의 인정소득은 수급시점을 기준으로 A값의 100%에 해당한다.

24)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의 경우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의 대다수가 저소득계층이라는 점에서 DC형을 중심으로 노후소득을 추정하였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대체율 변화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게 된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싸고 두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자는 주장과, 현행(40%) 수준을 유지하되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소득을 유지하자는 주장이 선명하게 대립되었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18).<sup>26)</sup> 이에 본 연구는 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이 40%로 점차 감소하고 이후에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 ② ‘2020년에 소득대체율이 45%가 된 상태에서 이후에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sup>27)</sup>’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 4) 분석 기준

본 연구는 Meyer et al.(2007)의 분석기준과 동일하게 결핍에 초점을 둔 ‘사회시민권(social citizenship right)’과, 불평등에 주목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사회시민권은 빈곤선을 활용한 것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남성집단(인구집단 11, 12)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집단을 대상으로 평균소득의 40%(상대적 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의 비중(%), 그리고 전체 인구집단과 남녀 각각의 중위 노후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살펴보게 된다. 한편, 사회정의는 롤즈(Rawls)의 사회정의(social justice) 관점에서 노후소득불평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연금을 받는 집단과 가장 낮은 연금을 받는 집단 간의 차이(gap)를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4. 분석결과

#### 1) 세대별 노후소득수준 비교: 추정결과

##### (1) 1970년생의 경우

1970년생 인구집단 1~10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 45%일 때 모두 Bridgen & Meyer(2009)가 제시하는 사회시민권 기준인 평균임금의 40%를 충족하는 경우는 하나도 발생

25) 수급시점에서의 연금액과 평균임금은 모두 할인율을 적용하여 만 65세가 되는 수급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26) 전자가 국민연금의 기능을 회복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다층체계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 적정성의 균형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27)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지 말고 이를 2018년 수준인 45%에 고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sup>28)29)</sup> 2020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여도 평균임금 대비 급여비율은 전체 인구집단에서 최대 0.7%p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시민권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퇴직연금과의 합산액으로 접근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표 3] 노후소득수준 추정결과: 1970년생

(단위: 원, %)

구분		급여액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40%	45%	40%	45%	40%	45%
집단 1	방식 1	1,221,181	1,245,508	71.7	73.1	20.4	20.8
	방식 2	1,312,035	1,336,363	77.0	78.4	22.0	22.4
집단 2	방식 1	1,382,342	1,417,936	66.7	68.4	23.1	23.7
	방식 2	1,557,283	1,592,877	75.1	76.8	26.1	26.6
집단 3	방식 1	1,253,713	1,279,578	63.0	64.0	21.0	21.4
	방식 2	1,359,104	1,384,969	68.1	69.4	22.7	23.2
집단 4	방식 1	1,253,713	1,279,578	63.0	64.0	21.0	21.4
	방식 2	1,253,713	1,279,578	63.0	64.0	21.0	21.4
집단 5	방식 1	1,209,121	1,221,467	77.5	78.3	20.2	20.4
	방식 2	1,249,628	1,261,974	80.1	80.9	20.9	21.1
집단 6	방식 1	1,128,519	1,145,312	100.0	100.0	18.9	19.2
	방식 2	1,128,519	1,145,312	100.0	100.0	18.9	19.2
집단 7	방식 1	1,799,182	1,841,495	59.8	61.2	30.1	30.8
	방식 2	2,037,122	2,079,435	67.7	69.1	34.1	34.8
집단 8	방식 1	1,488,636	1,500,993	54.8	55.2	24.9	25.1
	방식 2	1,541,431	1,553,788	56.7	57.1	25.8	26.0
집단 9	방식 1	1,791,592	1,841,608	43.8	45.0	30.0	30.8
	방식 2	1,791,592	1,841,608	43.8	45.0	30.0	30.8
집단 10	방식 1	1,889,908	1,934,445	56.9	58.3	31.6	32.4
	방식 2	1,889,908	1,934,445	56.9	58.3	31.6	32.4
집단 11	방식 1	2,196,888	2,250,515	47.8	49.0	36.8	37.7
	방식 2	2,562,399	2,616,026	55.7	56.9	42.9	43.8
집단 12	방식 1	2,209,617	2,247,297	42.4	43.1	37.0	37.6
	방식 2	2,465,589	2,503,269	47.3	48.0	41.3	41.9

주 1) 방식 1은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 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C) 합산액

주 2)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B값 대비(%)

주 3) 모든 수치들은 수급개시시점(만 65세) 기준

28) 평균임금의 40%는 EU에서 흔히 사용하는 빈곤선의 기준이기도 하다.

29) 후술하겠지만 1980년생, 1990년생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로 상승하여도 사회시민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가정에 따라 2020년부터 퇴직연금의 가입을 의무화하여도 1970년생은 은퇴시점까지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에서 얻게 되는 노후소득 역시 높지 않다. 퇴직연금을 통해 가장 많은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인구집단 11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대비 급여율이 약 6%p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나머지 인구집단에서는 급여율의 상승폭이 1%p 수준에 머문다. 대부분의 인구집단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이를 국민연금과 합산하더라도 인구집단 1~10에서 사회시민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인구집단 6이 주목할만한데 이들은 소득수준이 매우 낮지만 A값에 따른 재분배 효과로 인해 장기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100%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소득대체율이 높더라도 실제 급여수준은 평균임금 대비 19%에 불과하여 국민연금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1970년생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사회정의 기준<sup>30)</sup>은 60%로 거의 모든 인구집단에서 노후소득의 절대액 부족이 문제이며, 후세대와 비교할 때 아직 집단 간 소득격차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 (2) 1980년생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1980년생이 국민연금만 수급할 경우, 인구집단 1~10에서 사회시민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인구집단 7의 경우, 사회시민권 기준에 근접 - 약 39% - 하게 된다. 1970년생과 비교할 때 이들의 국민연금 급여액은 소득대체율 감소로 인해 인구집단 6을 제외하면 평균임금 대비 급여수준이 2~4%p 정도 감소하는 반면, 정규직으로 근로한 남성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급여수준 향상이 크게 두드러진다. 국민연금만 수급할 때보다 최대 18%p까지 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1970년생과 달리 퇴직연금 의무화 이후 은퇴시점까지 최대 2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집단 7, 11, 12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로 일함으로써 퇴직연금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이 45%로 상승하더라도 사회시민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평균임금 대비 급여수준은 40%일 때와 비교하면 그 상승폭이 1%p - 최대 1.7%p 상승 - 를 상회하는 것에 그친다. 이때도 인구집단 6의 소득대체율은 100%에 달하지만 대체율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평균임금 대비 급여수준은 약 15%로 1970년생(18.9%)보다 더 낮아진다.

1980년생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사회정의 기준은 88.9%로 1970년생(60%)과 비

30) 사회시민권과 달리, 사회정의 기준은 소득대체율 40%에 대한 분석결과에 한하여 설명하였으며, 출생년도별 사회시민권 및 사회정의 기준은 [표 6]의 내용을 참조할 것

교할 때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정규직·전일제 근로자 위주로 퇴직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집단과 자영자 및 시간제 근로자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퇴직연금 비중이 늘어날수록 이 같은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4] 노후소득수준 추정결과: 1980년생

(단위: 원, %)

구분		급여액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40%	45%	40%	45%	40%	45%
집단 1	방식 1	1,595,777	1,675,235	61.1	64.1	18.2	19.1
	방식 2	2,039,893	2,119,350	78.0	81.1	23.3	24.2
집단 2	방식 1	1,823,428	1,922,804	58.2	61.3	20.8	21.9
	방식 2	2,580,443	2,679,820	82.3	85.5	29.4	30.6
집단 3	방식 1	1,704,893	1,787,118	59.7	62.6	19.5	20.4
	방식 2	2,505,883	2,588,108	87.8	90.7	28.6	29.5
집단 4	방식 1	1,704,893	1,787,118	59.7	62.6	19.5	20.4
	방식 2	1,704,893	1,787,118	59.7	62.6	19.5	20.4
집단 5	방식 1	1,553,046	1,613,524	64.1	66.6	17.7	18.4
	방식 2	1,838,193	1,898,671	75.8	78.3	21.0	21.7
집단 6	방식 1	1,375,329	1,498,266	100.0	100.0	15.7	17.1
	방식 2	1,375,329	1,498,266	100.0	100.0	15.7	17.1
집단 7	방식 1	2,381,098	2,500,453	51.4	54.0	27.2	28.5
	방식 2	3,439,035	3,558,390	74.3	76.9	39.2	40.6
집단 8	방식 1	1,934,051	2,005,443	45.7	47.4	22.1	22.9
	방식 2	2,396,110	2,467,502	56.7	58.3	27.3	28.2
집단 9	방식 1	2,645,410	2,786,683	42.2	44.5	30.2	31.8
	방식 2	2,645,410	2,786,683	42.2	44.5	30.2	31.8
집단 10	방식 1	2,491,814	2,616,744	49.4	51.9	28.4	29.9
	방식 2	2,491,814	2,616,744	49.4	51.9	28.4	29.9
집단 11	방식 1	2,912,368	3,063,275	41.7	43.8	33.2	35.0
	방식 2	4,491,027	4,641,934	64.3	66.4	51.3	53.0
집단 12	방식 1	2,917,950	3,051,211	36.7	38.3	33.3	34.8
	방식 2	4,316,900	4,450,161	54.2	55.9	49.3	50.8

주 1) 방식 1은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 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C) 합산액

주 2)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B값 대비(%)

주 3) 모든 수치들은 수급개시시점(만 65세) 기준

### (3) 1990년생의 경우

1990년생에서도 국민연금만 수급할 경우, 인구집단 1~10에서 사회시민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을 합산하면 인구집단 7에서 사회시민권 기준을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표 5 참조). 1980년생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2~3%p 정도 평균임금 대비 급여수준이 감소한다. 그 중에서도 1970년생과 1980년생에서는 소득대체율이 100%에 달하던 인구집단 6의 경우, 1990년생에서는 그 수준이 88.7%(소득대체율 45% 인상 시, 95.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1990년생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의무화 이후 은퇴시점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상승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1990년생에서는 퇴직연금이 정규직 남성근로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인구집단 10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은 자영자로서 퇴직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은퇴 후 국민연금만을 수급하게 된다. 후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감소의 영향이 커지는 탓에 1970년생과 1980년생에서 이들은 인구집단 2, 8보다 급여수준이 높았지만 1990년생으로 오면 오히려 급여수준이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낸다.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여도 여전히 인구집단 1~10에서 사회시민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제도설계에 따르면 1990년생의 경우, 이전 세대들과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 하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에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될 경우, 대체율 상승 폭은 40%일 때보다 2%p 수준에서 더 높아지나, 평균임금 대비 급여비율은 최대 2.5%p 증가하는 것(인구집단 11)에 그친다. 특히 여성을 비롯한 다수의 저임금 인구집단에서는 급여비율의 상승이 매우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생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사회정의 기준은 135.6%로 나타나며, 이는 1970년생(60%)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1980년생(88.9%)과 비교해도 상대빈곤선 대비 급여수준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집단 11, 12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증가가 크게 두드러지는데, 이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후세대로 갈수록, 퇴직연금이 성숙할수록 집단 간 노후소득에서의 격차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5] 노후소득수준 추정결과: 1990년생

(단위: 원, %)

구분		급여액		소득대체율		평균임금 대비	
		40%	45%	40%	45%	40%	45%
집단 1	방식 1	2,023,601	2,204,739	51.8	56.4	15.8	17.2
	방식 2	3,478,918	3,744,595	89.0	95.8	27.1	29.1
집단 2	방식 1	2,332,428	2,547,458	50.1	54.7	18.1	19.8
	방식 2	4,086,382	4,301,412	87.7	92.3	31.8	33.5
집단 3	방식 1	2,209,179	2,397,893	48.8	53.0	17.2	18.7
	방식 2	3,501,868	3,690,583	77.4	81.6	27.3	28.7
집단 4	방식 1	2,209,179	2,397,893	48.8	53.0	17.2	18.7
	방식 2	2,209,179	2,397,893	48.8	53.0	17.2	18.7
집단 5	방식 1	2,060,867	2,212,213	56.8	61.0	16.0	17.2
	방식 2	3,046,047	3,197,393	84.0	88.2	23.7	24.9
집단 6	방식 1	1,829,655	1,967,603	88.7	95.4	14.3	15.3
	방식 2	1,829,655	1,967,603	88.7	95.4	14.3	15.3
집단 7	방식 1	3,180,985	3,438,547	46.6	50.4	24.7	26.8
	방식 2	6,496,537	6,754,100	95.2	98.9	50.6	52.6
집단 8	방식 1	2,545,264	2,729,202	40.5	43.5	19.8	21.2
	방식 2	4,354,167	4,538,105	69.3	72.8	33.9	35.3
집단 9	방식 1	3,313,641	3,596,536	36.2	39.3	25.8	28.0
	방식 2	3,313,641	3,596,536	36.2	39.3	25.8	28.0
집단 10	방식 1	3,325,493	3,594,965	44.7	48.4	25.9	28.0
	방식 2	3,325,493	3,594,965	44.7	48.4	25.9	28.0
집단 11	방식 1	3,905,052	4,230,214	38.0	41.2	30.4	32.9
	방식 2	8,795,937	9,121,099	85.6	88.8	68.5	71.0
집단 12	방식 1	3,877,773	4,185,657	33.2	35.8	30.2	32.6
	방식 2	8,843,194	9,151,079	75.7	78.3	68.8	71.2

주 1) 방식 1은 국민연금 급여액, 방식 2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C) 합산액

주 2)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B값 대비(%)

주 3) 모든 수치들은 수급개시시점(만 65세) 기준

## 2) 서구 국가들과의 비교 : 사회시민권 및 사회정의 기준<sup>31)</sup>

지금까지 Meyer et al.(2007), Bridgen & Meyer(2009)의 가정에 따라 세대별 노후소득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를 기준으로 서

3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5%로 인상되어도 실제 급여수준이나 급여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소득대체율 40%에 관한 결과들을 가지고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기로 한다.

구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6]은 앞서 살펴본 결과들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1970년생과 1980년생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1990년생에서 1개에 한해 나타난다.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을 살펴보면 1970년생에서 1990년까지 그 수치변화가 일률적이지는 않다. 다만 성별에서의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임금은 후세대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 증가폭이 훨씬 적다. 이는 퇴직연금 급여액이 후세대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로 남성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정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후세대로 갈수록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영자나 저임금·시간제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이 거의 없는 것에 반해, 근로이력이 안정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노후소득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표 6] 사회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본 한국의 노후소득

구분	사회시민권 기준				사회정의 기준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수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여성의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1970년생	0	64.8%	82.1%	53.7%	60%
1980년생	0	71.2%	86.8%	55.3%	88.9%
1990년생	1	67.9%	105.6%	63.4%	135.6%

주 1) 국민연금과 퇴직연금(DC) 합산

주 2)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각 집단의 추정연금액 가운데 중위값에 해당하는 인구집단 연금액이 상대빈곤선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

주 3)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상대빈곤선 대비 최고연금액과 최저연금액의 차이

다음으로 [표 7]은 사회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일부 서구 국가들과 한국의 노후소득을 비교한 것이다.<sup>32)</sup>

서구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적연금이 발달한 국가 - 독일, 이탈리아 - 라고 하여 사회시민권이나 사회정의 기준에서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형(소득비례형) 사회보험의 전형적인 사례이나 실제로 사회시민권 기준에서 상대빈곤선을

32) Meyer et al.(2007)에서는 분석국가의 가입자들이 2003년에 가입을 시작하여 2049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수급시점을 다양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동일시점에서의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연구에서와 같은 거시경제변수와 임금이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서구 국가들에서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기업연금이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기업연금까지 합산한 금액인 것에 반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퇴직연금의 비중이 적거나 여전히 임의가입이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초과한 인구집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도 네덜란드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찍이 사적연금(기업연금)이 발달한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 성별에 따른 연금액 격차(gender pension gap)가 크고,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가 넓어서 재분배 성격이 강한 보편적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적연금으로 인해 연금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 같은 격차의 주요 원인은 기초연금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을지라도 여성들의 기업연금에 관한 접근성, 혹은 임금수준이 남성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있다(Frericks et al., 2006; 2007). 그렇다고 사적연금 발달이 반드시 노후소득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경우, 오래전부터 기업연금이 발달한 국가임에도 사회정의 기준에서는 가장 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적연금이 발달하면 성별 연금격차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비교하면 이런 현상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이 세대별로 60% 중반에서 70% 초반으로 나타나는데, 영국(62%), 독일(58%)과 비교하면 이것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별에 따른 연금액 차이는 후세대로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1990년생을 기준으로 보면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정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생은 그 범위가 60%인 것에 반해 1990년생은 135.6%에 이르러 후세대로 갈수록 노후소득에서의 격차가 커진다. 부연하면 1970년생은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스위스 다음으로 격차가 작지만, 1990년생에서는 스위스, 독일보다도 그 격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결과는 1970년생까지는 급여액의 절대적인 '부족'이 문제인 것에 반해 1990년생부터는 남녀 혹은 계층별 노후소득 '격차'가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표 기 사회시민권 기준과 사회정의 기준으로 본 서구 국가들의 노후소득**

구분	사회시민권 기준				사회정의 기준
	상대빈곤선 초과 인구집단수	상대빈곤선 대비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남성의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여성의 중위연금	상대빈곤선 대비 연금급여 범위
네덜란드	2	87%	141%	83%	182%
스위스	1	74%	91%	74%	74%
영국	1	62%	68%	60%	181%
독일	0	58%	67%	52%	115%
이탈리아	2	75%	106%	64%	222%

자료: Bridgen & Meyer(2009)

### 3)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거듭 하락함에 따라 상대빈곤선을 초과하는 인구집단은 세대를 막론하고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노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의 불충분성을 보완하는 온전한 노후보장제도로 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서구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이 그리 열악하지는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후세대로 갈수록 퇴직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전체 노후소득에서 그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성별 연금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훨씬 큰 노동시장 특성에서 기인한다. 다만 그 격차는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영자(인구집단 10)의 경우, 국민연금의 절대액만으로는 결코 낮지 않으나 퇴직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후세대로 갈수록 오히려 이들의 노후소득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금근로자 집단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인한 급여감소를 퇴직연금을 통해 상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상, 자영자 비중이 25.4%로 대단히 높은 편이고(OECD, 2018), 대다수가 영세자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균 소득수준 역시 낮은 편임을 고려하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sup>33)</sup>

이 연구가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가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생애 근로기간과 같은 가정이 한국의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적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영국 34년, 독일 33.5년, 스웨덴 37년으로 나타나는데 반해(Grech, 2015), 한국의 경우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4)</sup>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과잉추정된 것일 수 있고, 실제 연금액 수준은 추정된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다. 서구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0여 년 짧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은 본 연구 결과에서 20~30% 감액한 수치들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비교일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또한 높은 연공서열적 임금구조가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 고용

33)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영자의 60%가 연소득 4,000만원을 넘지 못하였고, 이중 소득 하위 20%의 연소득은 890만원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우해봉·한정림(2015)에서는 한국의 평균 가입기간을 24년 정도로 추정하였다.

35) 다만, 이는 간접적인 추정에 의한 것으로서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에 한국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노동부(2016)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연공성 -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수준 - 은 328.8로, EU 평균(169.9)이나 일본(246.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후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노후소득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며, 노동시장의 특수성보다는 '제도적 측면'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할 수 있다.

##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이 실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경우, 세대별, 계층별로 전체 노후소득의 구성과 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후세대의 노후소득을 증가시키려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는 필수적이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45%)이 노후소득수준 향상에 사실상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퇴직연금이 빠른 시일 내에 의무화되어 연금형태로 지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요한 노후소득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용이력이 안정적인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은 연금제도 본연의 목표인 은퇴 전 소득유지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역할 강화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전자가 훨씬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을 미루어 본다면(정창률, 2018),<sup>36)</sup> 이를 의무화할 경우 수급권 보호 등 지금보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에도 최근 퇴직연금과 같은 기업복지(occupational welfare) 영역에 대하여 규제 및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Natali et al., 2018). 아울러 이미 한국은 비교적 높은 기여율(8.33%)을 통해 운영되는 퇴직금제도가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향후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제도적 유산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진수, 2006).

다음으로, 퇴직연금 확대에 의해 남녀 간,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간 연금격차가 커지는 문제

36) 정창률(2018)은 지난 10년 동안 퇴직연금의 확대과정에서 금융이해당사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한 금융시장 확대와 이윤극대화를 통해 시장적 역할만을 강조한 결과로 제도 왜곡이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에 대한 대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퇴직연금을 자영자를 포함하여 비정규, 시간제 근로자에게까지 전면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 차원에서 지금보다 재분배 요소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최저연금이나 기초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최저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들은 서구 다층체계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사적연금이 의무화되는 경우 공적연금은 기초보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소득비례방식을 추구하였으나 연속된 연금개혁으로 인해 소득비례적 성격이 상당 부분 약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소득비례적 성격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향후 의무화될 퇴직연금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방향은 재분배 기능이 강화된 기초보장 형태로 가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유의미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하려면 저소득층의 급여를 보다 강화하는 추가적인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것인지가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제도적 합리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점진적 퇴직 등 노동시장과 연금제도와의 부정합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차원적으로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고려하지 못한 생애 평균 근로기간이나 임금연공성 등 한국 의 노동시장이 갖는 고유 특성들이 실제 노후소득 측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석에서 기초연금이 제외된 점은 후속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긴다.

## ■ 참고문헌 ■

- 강성호(2011). 생애기간을 고려한 공·사적연금소득 추정. 보험학회지, 88(4), 51-87.
- 강성호,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경제학연구, 56(3), 75-107.
- 고용노동부(2016).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2018). 2018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 국민연금재정계산 요약본 2.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 권혁진, 류재린(201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공공사회연구, 8(1), 38-92.
- 권혁창, 정창률, 염동문(2018). OECD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따른 연금개혁의 효과분석: GDP대비 공적연금지출을 중심으로. 경성대 사회과학연구, 34(2), 81-104.
- 김수완, 김순옥(2007).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전망: 사적연금의 수급자 수 전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271-295.
- 김진수(2006). 퇴직급여제도의 노후보장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2(1), 287-311.
- 김진수, 이윤진(2013). 국민연금의 합리적 역할과 발전 과제. 사회보장연구, 29(4), 81-108.
- 김진수, 정창률, 남재욱(2015). 정년연장이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87-111.
- 우해봉, 한정림(2014). 국민연금 수급률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성별 및 출생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0(2), 401-431.
- \_\_\_\_\_ (2015).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299-329.
- 유호선(2013).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의 분석: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9(4), 169-199.
- 이용하(2011). 다층연금체계 구축: 내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1(2), 1-27.
- 정창률(2010). 연금 체제(pension regime)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 한국사회복지학, 62(2), 329-348.
- \_\_\_\_\_ (2012). 한국 노후소득보장수준의 국제비교: 가설적 위험 인구 집단 추정 방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4), 428-459.
- \_\_\_\_\_ (2018). 퇴직연금 적용방식 개선 방안 연구: 노후소득보장 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 45(2), 123-149.
- 홍백의(2013). 소득재분배의 합리성 확보방안. 국민연금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료집.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129-160.
- Bridgen, P. & Meyer, T. (2009). Social Right, Social Justice and Pension Outcomes in Four Multi-Pillar Systems,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Welfare, 25(2), 129-137.
- European Commission. (2005). Working Together, Working Better: A new framework for the open coordination of social protection and inclusion policies in the European Un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COM(2005) 706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_\_\_\_\_. (2009). *Portfolio of indicators for the monitoring of the European strategy for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inclusion - 2009 update*, 2009 EC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DG.
- \_\_\_\_\_. (2012). *An Agenda for Adequate, Safe and Sustainable Pensions*, White Paper CM(2012) 55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Union. (2015). *The 2015 Pension Adequacy Report: Current and future income adequacy in old age in the EU*. Volume I . Luxembourg: EU.
- Frericks, P., Maier, R., & De Graaf, W. (2006). Shifting the pension mix: Consequences for Dutch and Danish women.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40(5), 475-492.
- \_\_\_\_\_. (2007). European pension reforms: Individualization, privatization and gender pension gaps. *Social Politics*, 14(2), 212-237.
- Grech, A. G. (2015).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in Europe*. Scholars' Press.
- Holzmann, R. & Hinz, R. (2005). *The so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of Europe*. Scholars' Press.
- Meyer, T., Bridgen, P., & Riedmüller, B. (eds). (2007). *Private Pensions Versus Social Inclusion?* Cheltenham: Edward Elgar.
- Natali, D., Keune, M., Pavoli, E., & Seeleib-Kaiser, M. (2018). Sixty years after Titmuss: New findings on occupational welfare in Europe.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 435-448.
- OECD. (2009). *Pensions at a Glance 2009: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 \_\_\_\_\_. (2017).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Paris: OECD.
- \_\_\_\_\_. (2018). *OECD Employment Outlook 2018*. Paris: OECD.
- Rein, M. & Wadensjö, E. (1997). The Emerging Role of Enterprise in Social Policy. In Rein, M. & Wadensjö, E.(eds.). *Enterprise and the Welfare State*. Cheltenham: Edward Elgar. 1-32.
- Schils, T. (2009). The Netherlands. In Paul de Beer & Trudie Schils. (eds.), *The Labour Market Triangle: Employment Protection, Unemployment Compensation and Activation in Europe*. Edward Elgar Publishing, 96-118.
- Visser, J., & Hemerijck, A. (1997). *A Dutch miracle: Job growth, welfare reform and corporatism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Whiteside, N. (2006). Adapting private pensions to public process: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politics of reform.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1), 43-54.
- Zaidi, A., Grech, A. G., & Fuchs, M. (2006). *Pension policy in EU 25 and its possible impact on elderly poverty*. CASE paper, 116.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ondon, UK.

〈인터넷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Abstract ▶

## Comparing the future old-age income levels between generations in Korea based on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Focusing on national pension and occupational pension

Dahmi Lee\* & Chang Lyul Jung\*\*

The study aims to compare with the mid-term or long-term old-age income levels between generations in Korea by using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method when the occupational pension becomes mandatory.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no biographies will receive old-age income beyond relative poverty line when they receive the National Pension(NPS) only. However, when the occupational pension becomes mandatory,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increase significantly with offsetting the effect on reduction in income replacement ratio in the NPS, which will be not less than those of the Western countries. Second, the effect that increases in income replacement ratio in the NPS by 5% will be insignificant in nearly all biographies. Third, the bigger the propor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the larger pension gaps between income levels and between genders will b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adequate old-age incom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s of occupational pension throughout its compulsion and, other remedial actions in the NPS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women and low-income earners should be accompanied.

**Key words:** old-age income security, hypothetical risk biography, adequacy, the National Pension, compulsion in the occupational pension

◆ 2019. 4. 30. 접수 / 2019. 6. 16. 1차수정 / 2019. 6. 29. 게재확정

\* Researcher,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ekal84@yonsei.ac.k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ankook University(mymetapho@hotmail.com)